R-ABY 연구비시스템(RSC) 사용설명서

고신대학교복음병원

CONTENTS

1

개요

- 1-1. 연구비 청구 과정
- 1-2. 청구방법 구분(수기/전산)
- 1-3. 비목별 증빙서류 및 산정기준

2

연구비 청구방법 및 기능설명

- 2-1. 소개
- 2-2. RSC 접속방법
- 2-3. RSC 기능설명
- 2-4. 연구비 청구방법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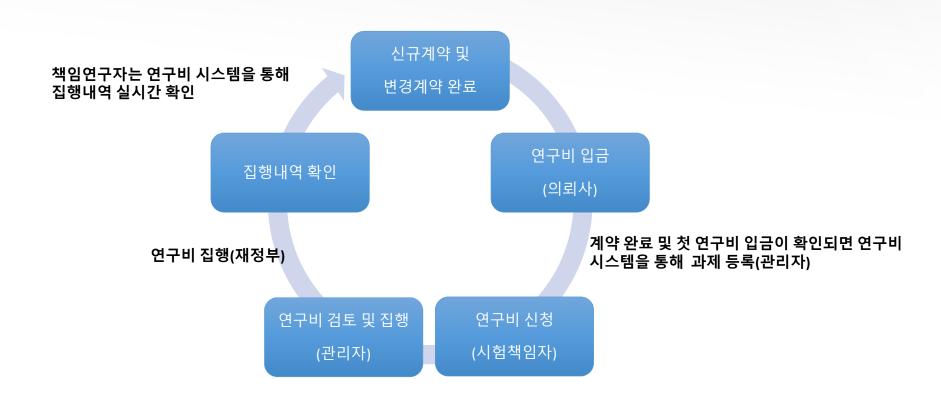
예산편성관리

- 3-1. 과제정보 확인방법
- 3-2. 예산잔액 확인방법
- 3-3. 예산편성 변경방법

Chapter 1. 개요

1-1. 연구비 청구 과정	1-2. 청구방법 구분(수기/전산)	1-3. 비목별 증빙서류 및 산정기준	

1-1. 연구비 청구 과정



개요

1-2. 청구방법 구분(수기/전산)

연구비 청구 방법은

- ① 수기 청구 ② 전산 청구(R-BAY 연구비 시스템) 로 청구가능.
- ① 수기청구(2020년 11월 1일 이전 계약 건)
 - 1. 연구비 신청 시,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,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임상시험센터로 제출
 - *연구비 지급 신청서 서식 및 증빙서류 양식은 [R-BAY 연구비 시스템] -> [게시판] -> [양식함] 에서 다운 가능
 - 2. 연구비 담당자 검토 후, 접수된 신청 내역별로 연구비를 집행
 - * 2020년 11월 1일 이전 계약된 연구들은 연구비 잔액 등이 연구자별 엑셀파일로 관리되며, 임상시험센터 문의를 통해 입금여부, 사용금액, 사용일자는 확인 가능함.
 - * 2020년 11월 1일 이전 계약된 건이라 하더라도, 첫 연구비 입금이 2020년 11월 이후 입금된 연구의 경우에는 전산을 통해 청구 필요

② 전산청구(2020년 11월 1일 이후 계약 건)

- 1. 연구비 청구시, R-BAY 연구비 관리 시스템(RSC)에 접속하여 연구비를 신청
- 2. 연구비 신청서(시스템내에서 직접 출력 가능) 및 증빙서류를 임상시험센터로 제출
- 3. 연구비 담당자 검토 후, 접수된 신청 내역별로 연구비를 집행
- * 지출된 내역은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연구자가 확인이 가능함.
- * 연구비내역서 비목별 예산에 따라 연구비 집행가능하며, 직접비내에서는 연구비 변경보고를 통해 비목별 금액 변경 가능함.

1-3. 비목별 증빙서류 및 산정기준

비목	공통 / 증빙서류	산정기준
시험책임자 인건비	*연구비 지급신청서(공통) + <mark>인건비 영수증(</mark> R-BAY 연구비시스템 내 게시판-> 양식함에	가. 시험책임자 인건비의 집행은 직접비의 50% 이하로 제한한다.(관찰연구, PMS는 예외) 단, 시험책임자 인건 비를 50% 이상으로 집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 시에는 센터장의 허가를 득하여 집행 가능하다
시험담당자 인건비	서 양식 다운 가능)	나. 개인 CRC인건비는 매월 지정 기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.
회의비	*지급신청서(공통) + 영수증 (or세금계산서) + <mark>회의록</mark>	가. 해당과제 수행에 따른 각종 회의에 소요되는 다과 및 식대 경비
фЩ	*지그시청 서/고토)	가. 해당과제 수행에 따른 학회 및 회의참가, 자료수집, 정보교환 등을 위한 국내·외 출장비를 말하며, 왕복교통비, 출장 중의 자체경비(일비, 숙박비, 식비)를 말한다. 나. 국내여비: 과제수행에 따른 회의, 자료수집, 학회참석등에 소요되는 시내·외 출장비다. 국외여비: 과제수행에 따른 국제학회 참석 등에 소요되는 국외 출장비
진료비 및 검사비	*지급신청서(공통) + 검사료 영수증(or 검사료내역)	진료비, 검사료 및 입원비는 매월 청구에 의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
연구기자재비	*지급신청서(공통) + 영수증(or 세금계산서) + 기타 거래명세서 등	가.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부대경비(통관비, 보세, 운송료 등) 나. 연구기자재 임차료 및 연구시설의 설치・구입・임차 또는 운영에 필요 한 경비로서 일반관례에 따라 산정 된 금액
시험대상자 교통비	*지급신청서(공통) + 교통비영수증(R-BAY 연구비시스템 내 게시판-> 양식함에서 양식 다운 가능)	대상자 방문에 따른 경비로 연구비계좌에서 지급한다.
재료비	*지급신청서(공통) + 영수증(or 세금계산서) + 기타 거래명세서 등	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약, 약제, 실험도구 및 소모용품구입비를 말한다.
인쇄비	*지급신청서(공통) + 영수증(or 세금계산서) + 기타 거래명세서 등	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우편료, 택배비, 퀵서비스비, 복사비, 인화비, 제수수료등을 말한다.
공공요금 및 잡비	*지급신청서(공통) + 영수증(or 세금계산서) + 기타 거래명세서 등	공공요금(전신전화 사용료, 전용선 사용료 등), 제세공 과금, 제잡비 기타

*** 연구비 사용 시 주의사항****

- <u>카드 사용시 개인카드 사용은 불가하며,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</u>
- 현금으로 결제 시, 병원 사업자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필수 제출 필요(병원 사업자번호: 603-82-01615)

Chapter 2. 연구비 청구방법 및 연구비시스템 기능설명(전산)

2-1. 소개 2-2. RSC 접속방법 2-3. RSC 기능설명 2-4. 연구비 청구방법

• R-BAY System 개요

2-1. 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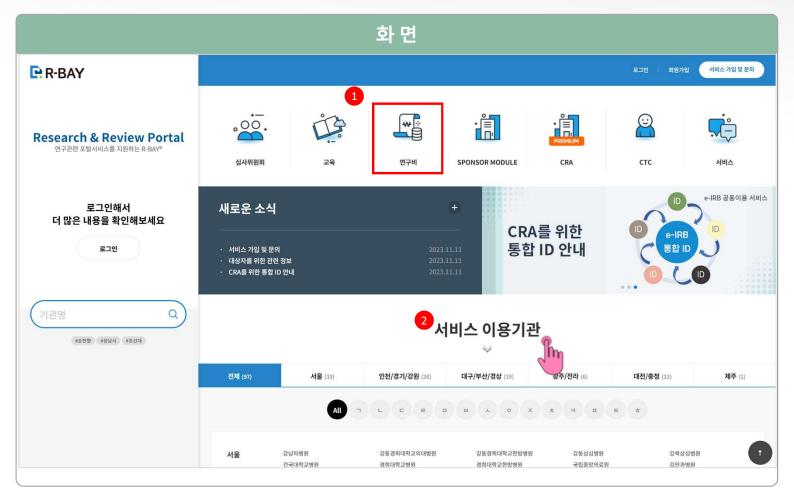
• R-BAY 시스템 URL : https://r-bay.co.kr

- R-BAY 시스템 제공 서비스
 - ① e-IRB 행정 ② e-IRB 관련 업무(온라인교육, 모니터링룸 예약, 온라인 결제 등)
 - ③ 연구비 관련 업무(RSC)
- 시스템 사용 유의사항
 - ① 기존 시스템(e-IRB) 회원의 경우

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아이디, 비밀번호로 R-BAY 시스템 로그인 → '통합 아이디 생성' 과정 진행

- ※ 기존 e-IRB 데이터 연동 필요한 경우 반드시 위의 과정으로 진행 필요
- ※ 기존 아이디 1개만 보유중이라도 위의 과정으로 진행
- ② 기존 시스템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진행 후 서비스 이용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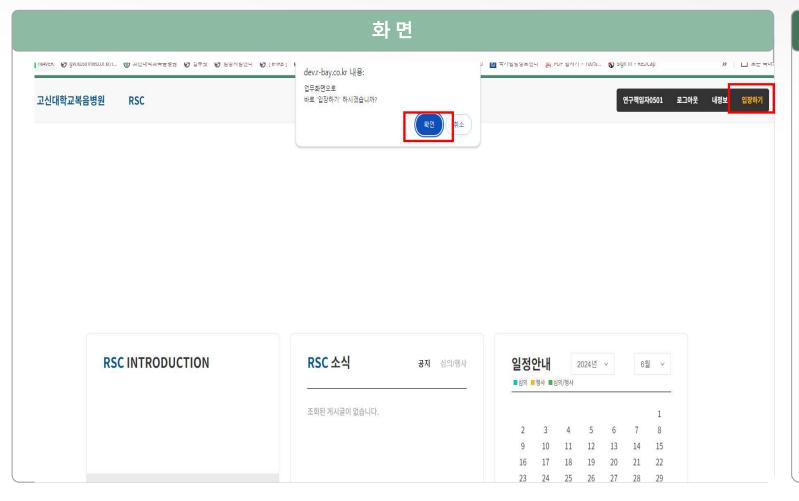
2-2. 연구비시스템(RSC) 접속방법



설 명

- ① 메인화면 상단의 연구비 배너 클릭
- ② 연구비 배너를 클릭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기관이 나타나게 되고, 여기서 '고 신대학교복음병원' 선택

2-2. **RSC 접속방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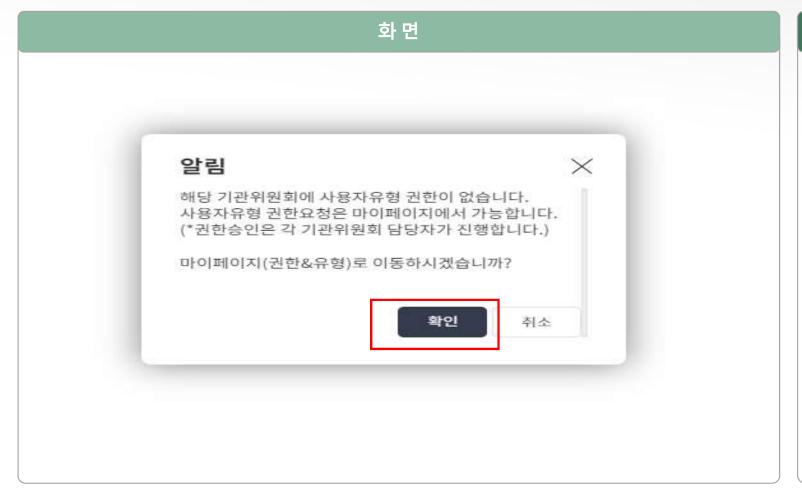


설 명

[업무화면으로 바로 입장하시겠습니까?] 팝업버튼이 나타나면 '확인' **또는**

우측 상단의 '입장하기 ' 버튼을 통해 연구비 시스템에 접속 가능

2-2. RSC 접속방법 – 권한 신청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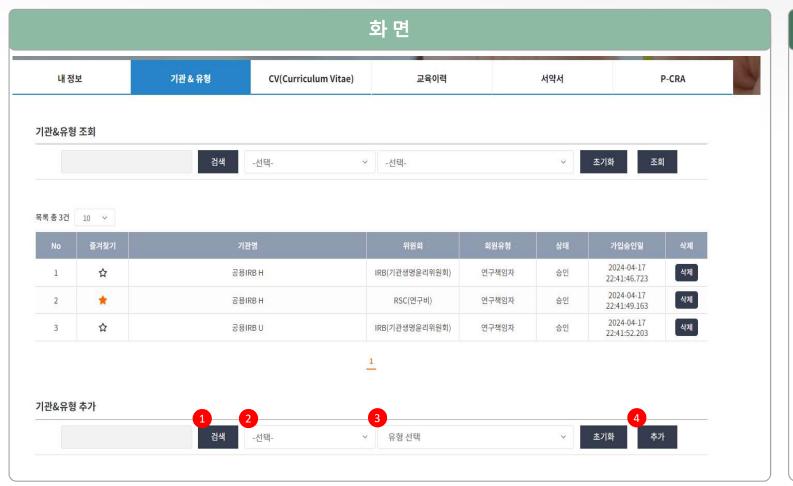


설 명

이때 권한이 없다는 팝업이 뜬다면 '확 인'을 클릭하여 권한 요청(다음 슬라이 드 참고)

*이미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절차는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.

2-2. RSC 접속방법 – 권한 신청 방법



설 명

해당 화면에서

① 검색:

고신대학교복음병원 선택

② 선택:

RSC(연구비 선택)

③ 유형선택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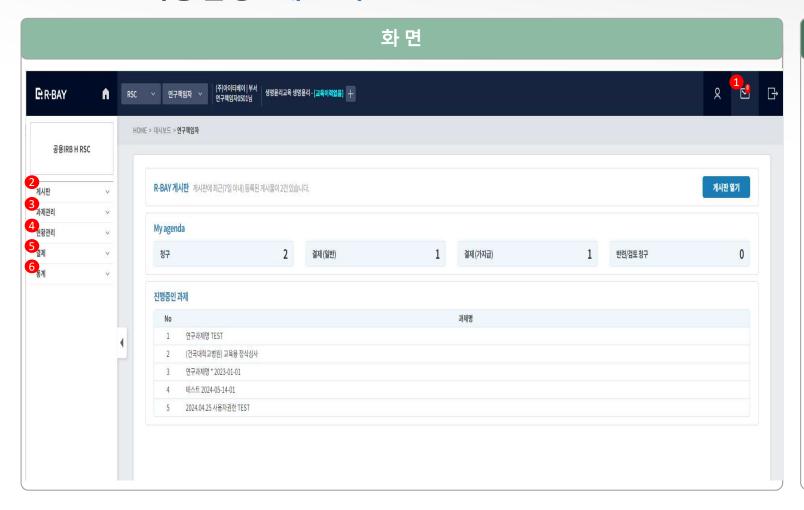
본인이 해당하는 직군 선택 (ex 시험책 임자라면 시험책임자로)

위의 사항을 모두 입력 후

④ 추가 진행

*이후 연구비 관리자가 권한을 승인하게 되면 연구비시스템에 입장 가능

2-3. **RSC** 기능설명 - 메인 화면



설 명

연구비 시스템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, 각 Tab들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.

① 쪽지:

쪽지 기능으로, 검토사항이 있을 시 연구비관리 자와 연구비 검토 관련 쪽지를 주고 받을 수 있 는 항목

② 게시판 :

시스템 관리자가 등록한 공지사항 및 자료들을 확인 할 수 있다.

③ 과제관리 :

각 과제별 연구비 정보 확인, 연구비 청구 등을 진행하는 화면

④ 현황관리 :

집행된 연구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

⑤ 결재 :

연구간호사 또는 연구담당자가 작성한 청구내역 서의 결재를 진행하는 화면

⑥ 통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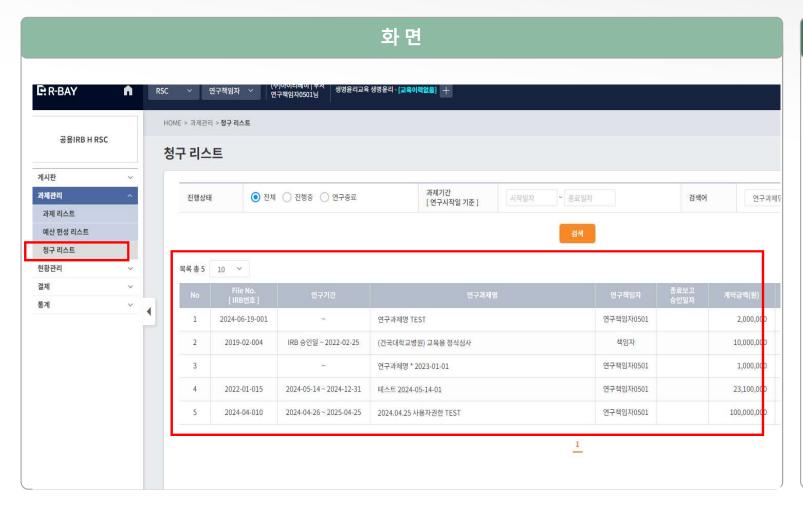
년도별 계약금액 및 입금액, 집행금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다.

2-3. **RSC** 기능설명 - 메인 화면



설 명

메인화면 왼쪽의 탭을 클릭하면 각 항목 당 아래로 관련 탭들이 생성된다



설 명

- 1. 과제관리에서 '청구 리스트' 탭으로 들어가면 우측 화면에 연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연구 리스트들이 보여진다.
- 2. 연구 리스트에서 연구비를 청구할 과 제를 클릭한다.



설 명

-청구 과제에 접속하면 해당 과제의 청구 리스트들이 보여지고, 연구비 청구 시에 는 우측에 '청구서 생성' 탭을 클릭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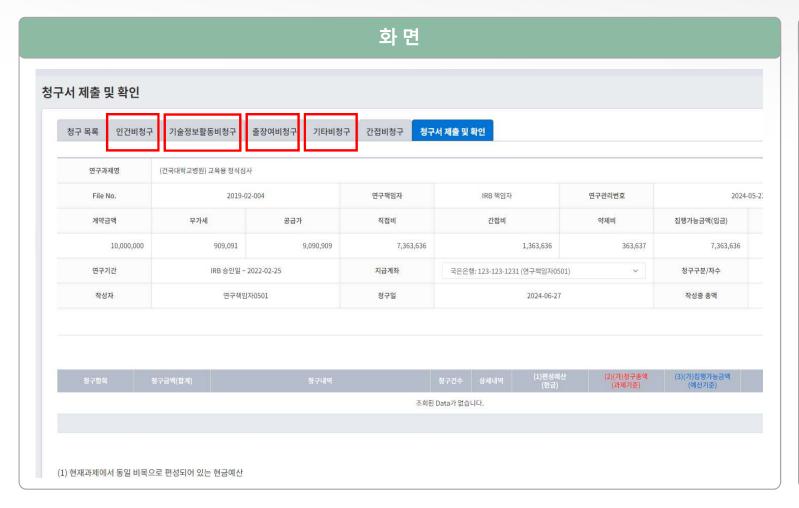
중요 법인카드 사용 분과 인건비 사용분, 현금 사용 분은 별도의 청구서를 생성하여 따로따로 청구 진행 필요

(ex. 인건비 + 법인카드로 사용한 연구비 같은 청구 차수로 청구 불가)



설 명

- 1.청구서 생성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.
- 2. 청구구분을 '일반'으로 설정하고 아래 의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.



설 명

이전 화면에서 저장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,

연구비를 청구할 항목에 따라 해당 항목 을 클릭하여 연구비를 신청 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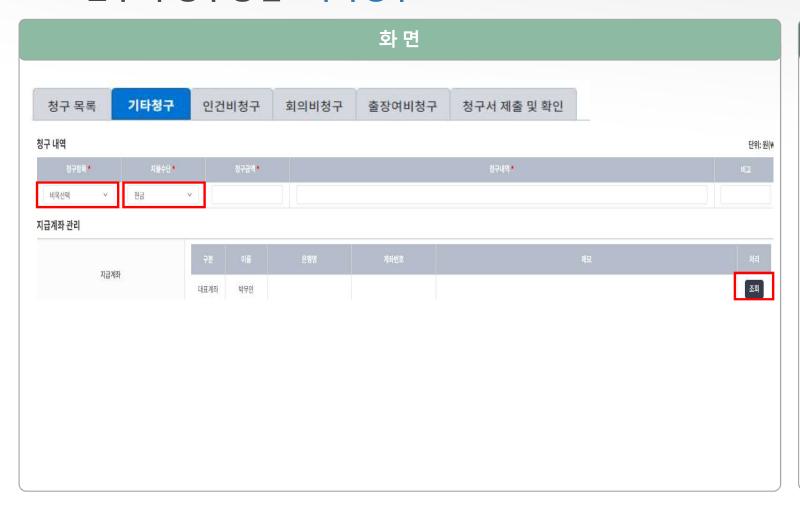
2-4. 연구비 청구방법 - 인건비 청구



설 명

- 1. 인건비 청구 시, 인건비 청구 항목에서 '등록'을 클릭하고 필수 항목을 모두 입 력한 후 '저장'을 진행한다.
- * 이때 세금은 일괄 '공제 전' '기타소득 8.8%'로 둘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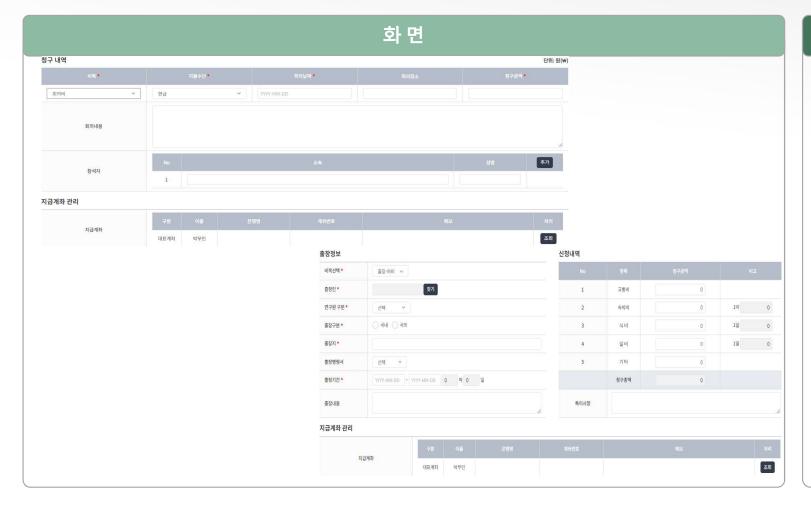
2-4. 연구비 청구방법 기타청구



설 명

- *기타청구에서는 진료비 및 검사비, 연구 기자재비, 시험대상자 굩오비, 재료비, 인 쇄비, 공공요금 및 잡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.
- 1. 청구항목에서 청구할 항목 및 지불 수 단을 선택하고 ex)법인카드를 사용한 경 우 법인카드를 선택. 필수 입력사항을 모 두 입력한다.
- 2. 지급받을 계좌롤 아래 '조회 ' 버튼을 눌러 지급받을 사람의 계좌 정보를 직접 입력한다. *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없음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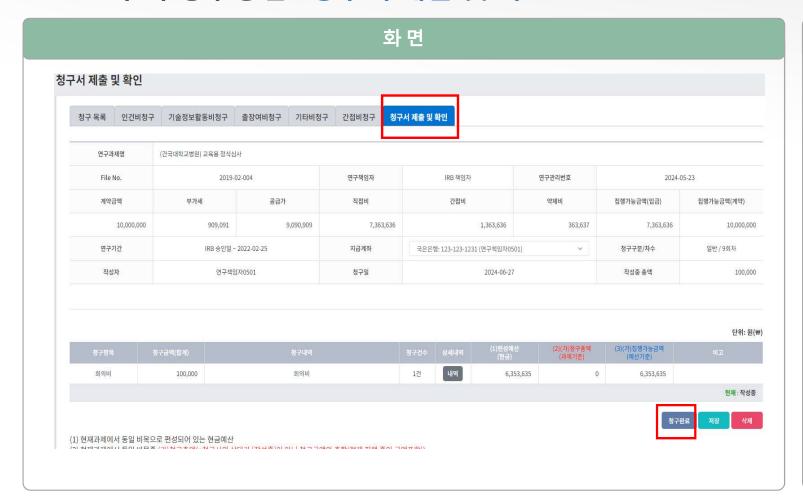
2-4. 연구비 청구방법 – 회의비, 출장여비 청구



설 명

회의비 및 출장여비의 경우에도 위의 청 구절차와 동일하게 관련 필수 입력사항 을 모두 입력 후 저장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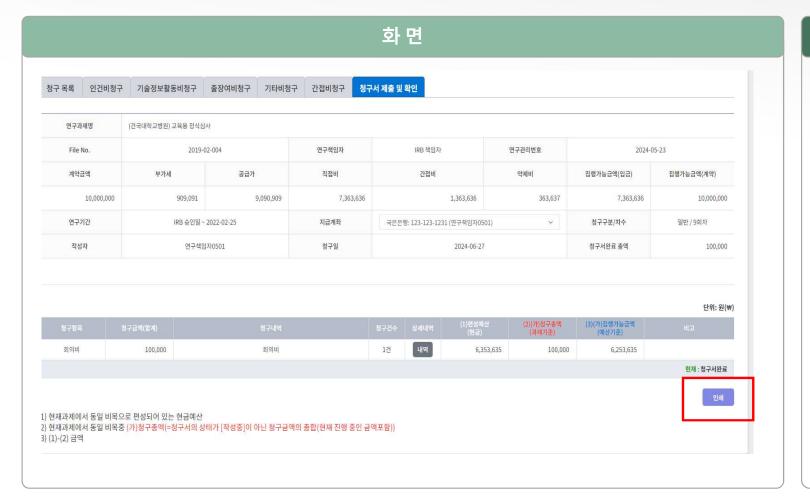
2-4. 연구비 청구방법 청구서 제출 및 확인



설 명

1. 청구할 연구비의 작성 및 저장이 완료 되면 '청구서 제출 및 확인 ' 탭에서 청구 완료 버튼을 눌러 청구를 진행한다.

2-4. 연구비 청구방법 - 청구서 제출 및 확인



설 명

청구가 완료되면 청구 목록에서 해당 청구서로 다시 접속하면 '인 쇄 ' 버튼이 활성화 되고, 해당 인 쇄 버튼 눌러 연구비 지급신청서 를 출력하여, 연구책임자 서명 후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임상시험 센터로 제출한다.

*기존 연구비 청구 절차와 동일

Chapter 3. 예산편성 변경방법

3-1. 과제정보 확인방법 3-2. 예산잔액 확인방법 3-3. 예산편성 변경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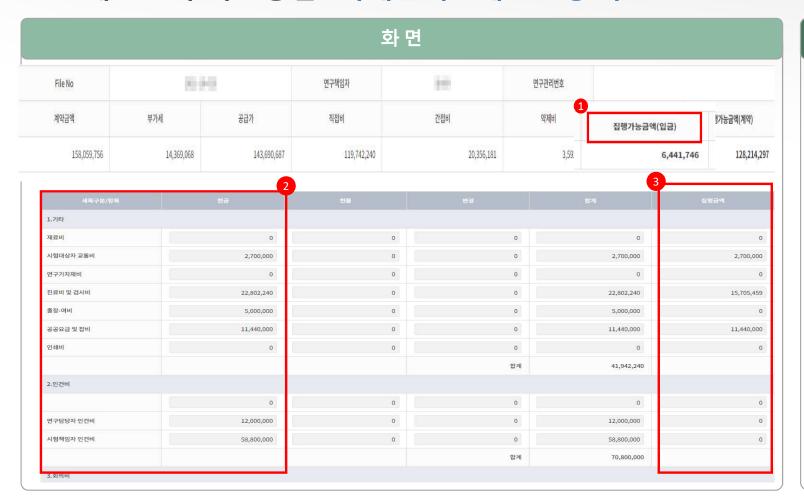
3-1. 과제정보 확인방법-과제관리 - 과제리스트



설 명

왼쪽 탭의 과제관리에서 과제리스트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서 본인의 현재 연구와 입금누적액, 집행가능금액 을 볼 수있으며, 해당 과제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과제 정보 및 입금현황, 연구참여인력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,

3-2. 예산잔액 확인방법-과제관리 - 예산편성 리스트



설 명

① 집행가능금액(입금):

집행가능금액(입금)란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연구비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.

② 항목별 편성금액:

IRB에 보고된 연구비내역서에 따라 각 항목별 편성 금액이 정해지게 되며, 각 항목별로 편성된 금액을 한도로 집행가능금액(입금)내에서 연구비 사용이 가능하다.

- * 항목별 편성된 연구비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IRB에 연구비 변경 보고 후, 연구비 담당자에게 예산편성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.
- ③ 집행금액:

각 항목으로 사용된 연구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.

*예산편성 변경 시, 집행금액 이하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.ex) 집행금액에 교통비가 27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, 추후 예산 편성 변경 시, 교 통비 편성금액을 270만원 미만으로는 편성 할 수 없음.

3-3. 예산편성 변경방법

- 예산 편성 변경이 필요한경우
 - ① 연구비 총액 변경 없이 직접비 내 예산 금액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IRB에 연구비 변경보고 필요
 - -연구비 변경에 대해 IRB에 변경보고를 한 뒤, 해당 건에 대한 승인 통보서와 연구비 변경내역서를 연구비담당자 메일로 전달하여 예산편성 변경 요청
 - ② 연구비 총액이 변경되어 예산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계약 및 IRB에 연구비 변경 보고 모두 필요
 - 총 연구비가 증액 또는 감액 되었으나, 변경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 총 연구비 변경에 대한 변경 계약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, 변경계약 완료 및 IRB에 연구비 변경보고 완료 후 연구비 변경내역서와 IRB 승인 통보서를 연구바담당자 이메일(kosincra@naver.com)로 전달하여 예산편성 변경 요청

감사합니다

연구비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임상시험센터 연구비담당자 (☎051-990-6770, kosincra@naver.com)